

부천시 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12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5월13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해양)

□ 제안이유

-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,
- 운영위원회 위원을 30인까지 확대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을 현행 라급(8급 공무원 수준)에서 가급(5급 공무원 수준)으로 상향 조정함.(안 제13조제1호)
-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중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.(안 제13조제3호)
-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을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 조정함.(안 제14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운영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?	○ 시민단체나 NGO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입니다.
○ 위원 구성안에 보며는 평생학습과 관련 없는 단체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?	○ 평생학습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관련단체나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것입니다.
○ 운영위원회 위원수가 많으면 이익단체도 있고 이권에 개입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?	○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현행 15인의 위원으로는 회의를 하다보면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.
○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을 늘리면 안 되는지요?	○ 당연직들은 모두 평생학습과 관련 있는 분들로 줄이기는 곤란합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제 245 호
의결 연월일	2004. 5. 17

제안년월일 : 2004년 5월 15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중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20조에 이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 하므로 삭제
-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현재 위원수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수를 현행대로 존치

2. 주요골자

-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중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삭제(안 제13조제3호)
-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현재 위원수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수를 현행대로 존치(안 제14조제2항)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(자격기준)제3호를 삭제한다.

안 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)제2항중 “30인 이내의”를 “15인 이내의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3조(자격기준)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p>1. 소장은 <u>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</u></p> <p>2.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15인 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~④(생 략)</p>	<p>제13조(자격기준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소장은 <u>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</u>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</u> <u>규칙으로 정할 것</u></p> <p>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--30인 이내의--</u></p> <p>-----</p> <p>③~④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3조(자격기준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)</p> <p>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③~④(개정안과 같음)</p>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5 호
의결 연월일	2004. 5. 17 (제112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5. 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,
- 운영위원회 위원을 30인까지 확대하여 전문가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현행 라급(8급공무원 수준)에서 가급(5급공무원 수준)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13조제1호)
- 나.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을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 조정함(안 제14조제2항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자격기준)평 생 학습 센터 소 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p>1. <u>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13조(자격기준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